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2일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1명)

찬 성 자 :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재형,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황규복, 황인구 의원(47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바, 이에 위촉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4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 신 설 >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 신 설 >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 신 설 >	3.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u>
< 신 설 >	4.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u>
< 신 설 >	② <u>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u>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